

일-가정 양립 실태와 사회적 지원의 방향성 비교:

가족친화적이었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The Social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compared with that of Chosun Dynasty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김 성 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chon National Univ.

Professor: Kim, Sunghye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 참고문헌 |
| III. 일-가정 양립 실태와 사회적 지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rection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with the family support of Chosun Dynasty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f the period, including diaries of 『Soemilok』 and 『Miamilki』 and letters written by Yangban.

The major findings drawn from the literature were as follows: The husbands in Chosen, especially as public officials, were under strong obligation to support their family like working wives in modern society. They were able to care for and support their families and maintain their careers due to flexibility in their office hours. They had dual burdens of home management and outside labor but their requests for the necessities of life were resolved promptly in public offices. From this result, it was argued that the policy for dual burden for women would benefit from a consideration for flexibility and reduction of working hours. Especially it was emphasized that the border between home and work place should be more open and the relationship of family should be supported by work-family balance policy.

* 본 연구는 2009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김성희 (ksh@sunchon.ac.kr)

Key Words : 일-가정 양립 정책(work-family balance policy), 가족친화적 정책(family friendly policy), 돌봄노동(child rearing), 조선시대 가족(family of Chosun Dynasty)

I. 서론

현재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취업여성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24시간 연장보육서비스, 탄력근무제, 아이돌보미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가족의 돌봄 기능 수행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여성의 근로 상황을 개선하거나 고용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슬로우(Maslow)에 따르면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에는 안전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가 있다. 전통사회나 산업사회에서 가정은 이러한 인간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돌봄기능을 수행해왔지만, 현재 가족의 보살핌과 친밀성 유지를 위한 일은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의 시장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의 증가 등으로 가정도 더 이상 안전한 장소는 아니지만 여전히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증가하는 정신 병리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장소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의 수행과 가정의 정서적 기능 수행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윤리적으로 무엇보다도 가족의 유대와 가정의 돌봄 기능을 중시하였던 조선시대 관직자들이 어떻게 관직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즉 가족을 중시하던 조선시대에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규정을 제정하였는지, 관과 지역사회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지지하고 어느 정도 지원하였는지, 실제 관직자들은 가정과 일을 어떻게 양립시켰는지 사회적 지원을 고찰해 봄으로써 역사적 선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적 자료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일-가정 양립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처럼 일과 가정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된 것은 산업사회 이후로 조선시대에는 일과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사회적 일이 수행되는 공적 영역과 개인 생활이 영위되는 가정생활이 분리되어 있었다. 효를 강조하는 가족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였지만, 남녀유별의 관습이 있어 여성 중심의 사적인 가정생활과 남성 중심의 공적인 생활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관직에 종사하는 남자들은 가정생활과 공무를 분리하면서도 가족이데올로기를 실현해야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된 사회규범과 관습 속에서 조선시대 관직자들이 어떻게 균형을 모색하였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일 중심의 경제체제 속에서 가정친화적 균형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에게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두 영역 간의 경계의 투과성에 초점

을 두고 조선시대 관직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조선시대 관직자들의 사적인 생활에 대한 기록은 몇몇 일기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문제를 보는 시각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리라는 입장에서 조선시대 관리의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 양립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및 정책과 비교하여 가족친화의 방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정의 돌봄 노동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과 방법 모색에 준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본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조선시대의 일-가정 양립 실태를 고찰하기 위해 관직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양반이 남긴 문헌 즉 일기, 편지와 관에서 출간한 기록 자료 등을 조사하고, 현대 사회의 일-가정 양립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률 및 기업의 프로그램, 보고서 등을 조사한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가정과 분리된 일터에서 수행되는 직업이 많지 않았다. 공적 영역의 일로는 관직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관직은 양반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관노비도 관에서 일하던 직업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은 문자를 익히지 않는 계층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 실태를 양반의 관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조선시대는 가족중심의 사회였으면서도 양반의 삶은 공과 사가 구분되어 있었다. 학문, 벼슬살이, 사회생활은 공에 속했고, 가정생활은 사에 속했다 (하영휘, 2008). 양반의 공적인 생

활은 비교적 잘 드러나지만 사적인 생활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 문집의 경우 학문적이고 사교적이며 철학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적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과 사의 영역 간의 관계를 문헌으로 살펴보는 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직에 있었던 유희춘이 남겨놓은 일기인 ‘미암일기’와 관직을 갖지 못하였던 오희문이 남겨 놓은 일기인 ‘쇄미록’ 등 몇 편의 일기와 편지 등을 통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생활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유희춘은 1538년 문과에 급제하여 수찬, 정언 등의 벼슬을 거쳐, 1547년에는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유배에서 풀려난 후 다시 여러 벼슬을 거쳤으며, 1575년 이조참판을 지내다 사직하였다. 미암일기는 유희춘이 1567년 10월 1일부터 1577년 5월 13일까지 11년간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이다. 여기에는 조정의 공적인 사무로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매일 일어난 일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쇄미록(瑣尾錄)은 조선시대 양반이었던 오희문(吳希文) 선생이 기록한 일기이다. 오희문은 1539년에 출생하여 1613년에 7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하였고 그 아들 윤겸이 영의정 관직을 지냈다. 쇠미록 일기에는 1591년 임진왜란 당시로부터 9년 3개월 동안 가장(家長)으로서 겪은 일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 조선시대 양반 관료들의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을 나타내 주는 자료로 경국대전 법전과 조선왕조실록, 조병덕의 편지도 분석에 사용한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사적인 영역 고찰은 대부분의 기록이 공적 영역만을 다루고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하영휘, 2008). 본 연구에서도 몇 가지 사례에 의존하여 조선시대 관직자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생활을 추정하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조선시대 관직자의 일상을 알려주는 더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어 후속 연구로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III. 일-가정 양립 실태와 사회적 지원

1. 조선시대의 일-가정 양립

조선시대에 공적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은 적지 않았지만, 관료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늘날의 관공서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천의 경우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은 다른 가족의 일원으로 일하는 사비였다.

1882년 호적대장 도이상(都已上) 조에 따르면 여정(女丁) 6712명 중 관직종사자인 품직/입격자는 0명, 공천은 7명, 사비는 1090명으로 대부분이 사비였다(손병규, 2004). 사비는 주로 주가의 가사노동을 담당하면서 이의 댓가로 숙식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일과 사적인 가정 생활을 분리하여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일과 가정 생활을 비교적 분명히 분리하여 수행하였을 관직자의 경우, 남정(男丁) 4051명 중 품직/입격자는 103명으로 관직은 남성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공적 영역의 관직을 남성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고 여성은 주로 사적인 영역인 가내에서 일하였으므로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사적 영역과 구분된 공적 영역에서 일하던 남성의 경우는 수신제가후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유교이념에 따라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공무활동의 기본 덕목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을 양립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가정을 중시하는 효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 봉양, 봉제사 등의 가정 의식에 남성들의 관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가장은 가족 부양과 가족 보호에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직자들은 오늘날의 남성 관직자와는 달리, 일 뿐 아니라 가정에도 관심을 갖고 가정친화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 실태를 일과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관리의 일-가정 양립 실태

출퇴근 시간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고, 가사와 사회적인 노동이 경계를 이루는 시간이므로 일-가정의 양립 상황은 이의 융통성 여부에서 잘 나타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에 따르면(윤국일, 1990), 조선시대 모든 관청의 관리들은 묘시(5~7시)에 출근했다가 유시(17~19시)에 퇴근하였다. 해가 짧을 때에는 진시(7~9시)에 출근했다가 신시(15시~17시)에 퇴근하였다. 해가 길 때는 대체로 12시간, 짧을 때는 8시간, 평균적으로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무 시간은 오늘날의 노동시간과 비교해 적지 않았지만 출퇴근 시간은 융통성있게 운영되었다. 홍문관에서 관리로서 일한 경험과 일상생활을 기록한 유희춘의 일기에 따르면, 1567년 2월의 경우 출근 시간은 파루 후(새벽 4시경), 5경 2점(새벽 4시경), 날이 밝기 전, 아침 밥을 먹은 뒤, 묘시(6시 무렵)로 일정치 않다<표 1>. 출근 후에는 관에서 주는 아침과 점심을 먹기도 하였고, 퇴근도 10시, 저녁, 9시, 오후, 점심을 먹은 뒤로 일정하지 않다. 그 밖에 5월 3일에는 새참 전에 출근하여 미시(1-3시 무렵) 퇴근하였고, 8월 9일에는 아침밥을 먹은 뒤 출근하여 유시(5-7시 무렵)에 퇴근

하였다. 8월 14일에는 아침에 출근하여 신시(3-5시 무렵)에 퇴근하였으며 8월 21일과 8월 24일에도 신시에 퇴근하여 여름에는 일찍 퇴근한 것을 볼 수 있다. 5월 5일에는 유시에 입번하였고, 5월 11일에는 미시에 석강을 하여 저녁 근무를 하기도 하는 등 출퇴근 시간이 매우 유동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월 5일에 ‘오늘은 일이 없어 집에 있었다’는 기록에서 보듯이 일이 없는 날은 휴무를 하는 등 일과가 탄력적으로 조정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휴일도 일-가정 양립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조선시대에는 왕, 왕비, 대비의 생일과 설, 추석 등의 국경일과 왕, 왕비 사망일인 국기일이 휴일이었다. 이런 날들은 대체로 1년에 20여일 정도가 되었다(김경수, 이영화, 2004). 그리고 매달 1, 8, 15, 23일은 정기휴일이었으며 각 절기(입춘, 경칩, 입하 등 24절기)도 쉬었기 때문에 한달 평균 6일 정도의 법정공휴일이 있었다(이성주, 2007). 대체로 조선시대 휴무일이 1년에 60일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김경수, 이영화, 2004, p252), 오늘날에도 일요일과 공휴일의 법정휴일이 60여일 정도(2009년의 경우에 62일)인 것과 비교해 보면, 조선시대에 휴일이 더 많이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휴가의 경우 조선시대에도 개인적으로 봉제사, 혼례, 부모 봉양 등에 휴가를 낼 수 있었다. 경국대전 규정에 따르면(윤국일, 1990),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과 아들들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제사일은 부모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외조부모, 처부모의 제사는 2일, 백부와 백모나 숙부와 숙모, 형, 아우, 아내의 제삿날에는 3일이 주어졌다. 부모 방문은 3년에 1번, 조상의 묘를 보러가는 경우 5년에 1번,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러 가거나, 조상의 묘에 영광을 고하러 가거나 죽은 조상에게 베풀

슬이 추중되었거나 혼례가 있으면 7일 동안 휴가를 주었다. 이 밖에도 부모와 조부모상은 2년, 부모 병환 구환에 30일 이상이 주어졌다.

이러한 개인적인 휴가는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미암일기(1992)에 유희춘은 11월 16일 조상에 대한 참배의 상소를 올리고 17일부터 담양 등지를 방문하고 있다. 11월 29일에는 ‘피로에 지쳐 손바닥에 열이 나므로 해남에 두 달이나 머물러 조리를 하고 조비(할머니)의 묘소에 제를 지내고 담양으로 돌아와 상경할까 하지만 공연히 경연관이란 이름을 띄고 있는 것이 미안하므로 해남에 이르면 5-6일 뒤 사람을 서울로 보내 상소를 써서 감사에게 바쳐 전달토록 할까 한다.’고 결근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듬해 1월 23일 서울로 돌아온다.

이처럼 유희춘은 출퇴근과 휴가를 융통성 있게 가지면서 오늘날 맞벌이 주부가 가정을 돌보면서 직장 일을 하듯이 일과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 집안 돌보기를 하였다. 가사 관리 중 특히 집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생필품 관리와 손님접대, 노비관리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미암일기 중 1567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보더라도, 1일에는 ‘신 부안 권대덕이 찾아와 나는 광문의 결혼에 쓸 말안장을 부탁했다’고 했고, 2일에는 ‘아침에 고박사경조가 찾아왔다가 갔는데 나는 청어 한두름을 보냈다. 전 옥청의 수재 권영이 김치, 장 등의 반찬가지를 보내왔다. 노(奴) 내은석이 개성부에서 돌아와 유기그릇 2개 구리쟁반 1개를 가지고 10년 동안 몸으로 바칠 일을 못한테 대한 대가로 드린다기에 받았다. 고(故) 종성관관 최수장의 첩 만비가 와서 인사를 했다. 나는 백미 2승을 줬다. 아침에 박군난영의 노(奴)가 말장을 쓸 콩 20두를 받아갔는데 따로 콩 1두를 수고비로 줬다.’고 했다. 3일에도 ‘김협이 무 배추의 김치를 한 동이에 합하여 보내왔다.’ 4일에

〈표 1〉 1567년 조선시대 관리의 일과

월일* 일과	2월 3일	2월 5일	2월 6일	2월 8일
출근	5경 2점(새벽4시경)	일이 없어 집에 있었다.	파루 후(새벽 4시경)	일찍 밥을 먹고
아침식사	모화관에서 식사	-	-	-
점심	태평관에서 점심을 들고, 신시(3-5시 경) 관문밖 장랑(長廊)에서 또 식사	손님접대	-	-
퇴근	2경 중말(10시경)	-	밤 2경(9시)	저녁
퇴근 후	무 배추의 김치를 한동이 보내왔다.	금부 나장이 은어 4마리를 주었다. 현감이 노루가족신 두결레, 동화 세결레, 청어 15두름, 대구 10마리 문어 3마리를 보냈는데 담양의 집으로 갔다. 강의 이충의 댁에서 청어 2마리를 보내와 나는 백미 1두를 사례를 했다. 맹별좌의 처의 서얼 동생 심준이 온양에서 왔는데 별좌의 처 심씨가 방석 두넛과 왕골자리 두넛을 보냈다.	-	선비(先妣, 할머니)제사를 위해 병상(病狀)을 내게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2월 10일	2월 12일	2월 20일	2월 24일
출근	날이 밝기 전에 요기를 하고	병고(病故)를 내고 출근을 앓고 집에 있었다	아침에 대궐에 나아감	묘시(5-7시)에 경연청에 올라감
아침식사	-	-	-	-
점심	-	-	의막(依幕)에 들어가 점심을 먹음	-
퇴근	오후에 집에 돌아왔다	-	점심을 먹고 나옴	-
퇴근 후	경상좌수사의 편지와 전복 5접이 왔다. 친지들이 화 5자루, 면, 명함갑, 약과 떡을 보내왔다.	손님접대 친지가 육포 15조를 보내왔다 전복 1첩을 보냄 해남의 성주가 송어 2마리, 회새우젓 1두, 전어 20개, 간장 1병을 보냈다. 참봉이 뽕감나무 한짐과 숲 한섬을 보냈다. 검사가 해의 10첩, 감태 20조, 멧돼지포 3첩을 보냈다	손님접대 녹조 10두를 윤검지행에게 보내 타미와 바꾸어달라고 청함	담양집에 순창 2관이 쌀과 누룩을 주고, 흥덕에서도 소금 2석을 보냈다는 편지를 받음. 손님접대

* 2월 중 출근 시각이 기록된 날, 출근여부가 기록된 날을 선정하였음.

는 ‘박의 녹(祿)을 보냈는데 평(平)으로 2석이 다. 이로써 박의 녹은 다 온 것이다.’ 5일 출근 하지 않은 날에도 ‘의금부 나장 곽원손이 와서 인사를 했다. 은어 4마리를 주었다. 현감이 노루 가죽신 두 켤레, 동화 세 켤레, 청어 15두름, 대구 10마리 문어 3마리를 보냈는데 담양의 집으로 갔다. 한강의 이층의 댁에서 청어 2마리를 보내와 나는 백미 1두를 사례를 했다. 맹별좌의 처의 서얼 동생 심준이 온양에서 왔는데 별좌의 처 심씨가 방석 두 닢과 왕골자리 두 닢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는 서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는 선물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으므로 관아 등지에서 보내주는 식물(食物)과 물품은 당시 양반 관료의 살림살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정창권, 2003). 물품을 주고받는 선물경제는 조선중기까지 상당히 보편화된 경제체제였기 때문에(이성임, 2005), 생필품의 출납 관리는 유희춘 뿐 아니라 다른 양반들에게도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관직에 있지 않았던 오희문(1990)도 쇠미록 일기에서 농사일정과 농사짓기 감독 외에 의·식·주생활용품 조달 및 관리, 노비 관리, 친인척 방문 및 접대, 제사 관리, 혼례준비, 노약자 관리 등의 가정 관리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김성희, 2000).

이처럼 조선시대 남성은 가정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일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남성이 사회적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전통적인 남성 역할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조선시대 남성은 관직자라 하더라도 일과 가정 두 영역에 걸쳐 책임을 지고 어느 쪽에도 소홀하지 않았으므로 가정친화적인 업무수행은 남성에게서 역사성이 더 깊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수립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주로 취업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남성의 가정친화성을 회복시키고 남성을 일-가정 양립 정

책의 축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역사적 선례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다.

2) 조선시대 가정생활에 대한 관 및 관리의 지원

조선시대의 가족의 개념은 오늘날과는 달리 그 범위가 16세기까지는 부계만이 아니라 모계, 처가 쪽 일가인 처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일가는 구족, 즉 부, 모, 처의 형제자매 등으로 대단히 폭넓었고, 여기에 딸린 수십 명 수백 명의 집안 노비까지도 포함되었다.

일가를 부양하는 것은 한 지역사회를 부양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으므로(정창권, 2003), 국가에서는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의 가족 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경국대전 예전 규정에 관리 집안의 딸로서 30살이 가깝도록 생활이 곤란하여 시집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본조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혼인비용을 보내주었고, 임금의 집안사람이나 2품 이상의 관리가 병이 위급하여 의약 관계의 관청에 없는 약을 청구하면 승정원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보내주었다.

이 밖에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에서는 관직자들의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선물의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관리들은 관재의 사용을 공과 사를 구분하여 집행하지 않았는데, 다음의 미암일기에서 보듯이 인근의 지방관리들은 유희춘 가족을 위해 항상 각종 물건을 보내 주었다.

1567년 겨울 미암이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왔을 때 전라 감사를 비롯해서 광주목사, 담양부사, 창평현감 등이 매일같이,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식량과 반찬거리, 살림도구 등 각종 물건을 보내주었다. 특히 전라감사는 보성, 영암, 영광 곡성, 임실 등 다섯 고을 수령에게 지시하여 쌀, 콩 같은 식물을 보내주도록

하였고, 지방관이 미암이 없을 때에도 가끔씩 부인 덕봉에게 식물을 보내주었다.

조선시대 관료는 청렴결백하고 공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청백리가 되는 것을 직업적 윤리로 삼았다. 지방관을 역임한 자로서 인자하고 청렴결백하고 공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국가에 공헌이 있는 자는 청백리로, 생존 시에는 염근리(廉謹吏)라고 불리며 포상을 받았고 그 자손은 국가에 채용되었다(김병숙, 2003). 조선시대 후기 학자인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오직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만이 탐관은 아니다. 모든 식물과 선물을 보내온 것은 다 받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하였다(장승희, 2002).

관직을 이용한 선물과 칭탁(稱託)은 당사의 윤리로 보나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나 명백한 관권의 남용, 공금횡령, 부정부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친족망과 교유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선물 및 칭탁은 ‘양반상조(相助)의 관행’이었기 때문에(이성임, 2005), 이의 요청이 있을 때 관은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된 관직자들은 재분배의 일환처럼 호의적으로 지급하였다. 양반관료는 지방관아에서 보내주는 식물을 가지고 춘궁기 식량난을 해결하거나 토지를 사들이기도 하였다(정창권, 2003).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칭탁은 다음에서 보듯이 칭송되기까지 하였는데 오희문(1992)의 미암일기 2월 30일에 “어제 류동지의 부인이 동지의 막내 아우가 어려서 형수의 손에서 길러졌는데 이제 함양에 있으면서 병이 위독하다고 약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나에게 약이 있느냐고 하길래 나는 다시 유사인(舍人, 의정부의 정4품 벼슬) 감(槓)에게 청하여 오늘 아침에 보내줬다. 유부인의 부당(夫黨, 시갓 집 족당)에 대한 돈독한 정의와 충후하고 간곡함은 세상에 드문 일이다.”하였다.

전근대적 국가경제는 소비와 징수가 분명하

지 않은 선물경제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공무 수행 시 공과 사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공동체 사회로 민생 안정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서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생활에 경계를 긋지 않았다. 가족 부양은 사회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로 간주되어 공적인 국가 업무는 사적인 생활을 지원하면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성임, 2005).

관리가 관직을 이용하여 다른 관직자에게 가족부양을 공공연히 부탁하는 것도 미암일기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미암이 귀양에서 풀려나 서울로 올라가자 부인과는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부인이 1567년 8월 서울로 딸을 데리고 올라오자, 미암은 경기, 충청, 전라 3도의 감사에게 편지를 보내 아내 덕봉의 행차를 잘 호송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에 경기감사 금공홍윤이 내행(처의 행차)을 호송하라는 관자(시달문)를 보내고 부인은 관리들이 공무로 출장 다닐 때 이용하는 끼니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역을 이용하였다. 부인 일행은 역을 관할하는 현감으로부터 점심 제공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서울에 도착해서는 의정부에서 점심을, 홍문관에서도 음식대접을 받았다(정창권, 2003).

또한 미암이 담양에 내려와서는 부사에게 “대식구를 거느리고 내려오다 보니 이곳의 살림형편이 썩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며칠 있으면 집안의 제사까지 돌아와서 더욱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각 고을에 연락해서 식물을 좀 보내줄 수 없겠습니까?”라고 부탁하니 부사는 “당연히 보내 드려야지요. 각 고을에 연락해서 식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흔쾌히 허락하였고, 이 때 보내온 식물로는 유자, 미역, 송어, 참깨, 김, 생전복, 수처, 술, 과일, 백미, 콩, 누룩, 등유, 청주, 생

노루, 닭, 낙지, 석화, 꽃감, 고기 등이 있었다 (정창권, 2003). 이 외에도 유희춘은 47칸의 집을 짓는데 여러 지방관의 식물을 받아 그 비용을 조달하였다.

가정생활에 대한 물품수수는 중앙의 현직 관료나 신하로서만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관직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청탁과 선물이 관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양반 가족은 친족망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었고 지역사회의 중심 세력이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할 경우 관에서는 친족관계와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이에 적극 협조하였다.

쇄미록 일기에서 오희문(1990)이 가족부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관에 요청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딸이 젖이 잘 나오지 않자 태수에게 요청해 젖 있는 관비(官婢)를 시켜 젖을 먹이게 하였다(병신년 1월 29일). 딸 단아가 병이 걸리자 “부부는 서로 교대하여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어서도 또 인사불성이므로… 향비를 관아(官衙)로 보내서 청심환과 소합원을 구해오게 했다(병신년 9월 25일).’, ‘마침 관비 매화가 교대하기 위해 같이 춘금이(여중)와 들어왔다. 먼저 들어왔던 관비 평가가 교체해서 현으로 들어갔다(정유년 4월 7-8일).’, ‘군(郡)에 들어가 혼인에 쓸 물건 및 사기(沙器), 거군(炬軍)을 빌려주도록 말하여 응락을 받았다(갑오년 8월 5일~10일).’, ‘관청에서 만든 청절병과 수단으로 죽은 딸의 혼에 제사를 올렸다(정유년 5월 1일).’, ‘한식날이다. 관아에서 떡과 국수를 준비하여 먼저 신주 앞에 차례를 지냈다(정유년 2월 19일).’, ‘삼월 삼진 명절이다. 관아에서 준비한 떡과 편, 삼색 실과와 편육, 노루고기 적 등 제물을 먼저 신주 전에 바치고 다음에 죽은 딸에 앞에 갖다 놓으니 애통스런 심사가 더욱 간절하다(정유년 3월 3일).’

손자의 양육에 필요한 젖, 딸의 병 구환에

필요한 약과 수발 자, 혼인에 쓸 물품과 인력, 제사에 올릴 물품을 관에 요청하여 가족을 부양한 것 외에 오희문은 수령인 아들의 관아 노동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현에서 집으로 심부름 오는 문안 인을 시켜 나무를 베어오게 하거나 관비에게 동과나 유월두를 심는 일을 시키고, 관의 목공을 시켜 집에 필요한 절굿공이, 베틀 등을 제조하게 하며 풀무장이에게 호미, 도끼, 부엌칼 등을 만들게 했다(박미혜, 2007).

관직자가 공과 사가 불분명하게 사적인 가족부양에 관재를 사용하는 것을 관직자였던 오희문의 아들 오윤겸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는 평강의 수령으로 발령을 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쌀과 콩 등의 곡식과 젓갈, 장, 어물, 굴, 오미자, 꿩, 버섯 등을 보냈는데, 관에서 직접 보내는 것과 오윤겸이 보내는 것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때로는 관에 바칠 물건이 아버지에게 먼저 보내지기도 하였다 (박미혜, 2007).

한편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던 19세기 학자 조명덕도 그의 편지에서 관의 도움으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생활을 하였는데 역서(曆書)는 조카인 진천 현감 조용희가 선물로 보내주는 것을 이용하였다. ‘첨정(僉正)이 보낸 역서는 관에서 만든 역이다. 귀한 것이다. 그것과 내가 2냥 주고 사온 것을 합하여 써도 부족하니 걱정이다(하영휘, 2008, 124).’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조명덕은 호남과 영남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 있는 자제들이 보내주는 부채를 가계운영에 필요한 선물로 이용하였는데, ‘부채는 왜 보내지 않는가? … 남원에 도입한 것이 벌써 1년이 되었는데(하영휘, 2008, 128)’라고 선물을 독촉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 생활 필수품으로 조명에 쓰이던 육축도 관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쓴 것을 다음의 편지에서 볼 수

있다. ‘근자에 아산에 갔다 왔는데 현감이 50 자루를 보내서 겨우 털어짐을 면했다(하영휘, 2008).’

이상에서 보듯이 조선시대에는 가족부양을 위한 지원이 일상적으로 관직자 간, 비관직자와 관직자 간에 물품 부조, 선물수수, 청탁 등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공식적인 선물, 청탁의 관행은 조세 대상자인 양인에게 부담을 지우기는 하였지만 당시 지역사회는 양반의 대가족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기 때문에 양반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안정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의 관행이 저항없이 수용되었다. 또한 효 이데올로기는 국가가 통치의 기반으로 삼는 윤리였으므로 가족부양과 관련된 일에 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가족 유지 및 가족이데올로기 유지에 이용되었던 선물과 청탁의 관행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선물경제가 상품경제로 변화됨에 따라 바뀌게 된다(이현창, 2000). 상품경제의 도입으로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분리되고 현대사회의 공직 등 직업 생활은 가정생활과 분리된 경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효로 대표되는 가족이데올로기가 퇴색되고 사회적 생산을 증가시키는 노동효율이 강조되면서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2. 현대 사회의 일과 가정 양립

1) 공무원 및 근로자에 대한 근무규정

조선시대에는 근무 규정시간보다 융통성있게 근무하여 적은 시간 근무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규정 근무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을 일한다고 보면 조선시대보다는 일일 1시간 정도 덜 일한다고 볼 수 있다. 1주간 근무시간은 공무원 및 근로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법률정보시스템, 2009).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은 2004년의 경우 주당 평균 남자는 46시간 여자는 약45시간으로 규정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09). 휴가의 경우도 가족중심의 조선시대에는 부모봉양 등의 가정사와 관련된 휴가가 많이 주어졌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에 중점적으로 휴가가 주어지고 있다.

법정휴일을 보면 일요일과 공휴일 60일 정도이며 공무원은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로는 국가공무원법 상,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일 경우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상에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상에 2일, 본인 결혼에 7일, 입양에 14일의 특별휴가가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09). 이외에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적게는 4일에서 많게는 23일까지 쓸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자 공무원과 여성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보건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고, 출산휴가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09).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국가공무원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3일을 규정하고 있다(법률지식정보시스템, 2009).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과 여성근로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장기간의 휴직도 보장되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

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으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 휴직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09).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선시대와 비교해 볼 때 부모봉양, 가족화합을 위한 가족 의식에 대한 휴가는 적은 반면, 육아를 위한 휴직은 더 많이 보장되어 있다. 육아 휴가는 조선시대와 비교해 길지는 않으나 배우자 휴가를 볼 때 부부 단위의 가족 휴가가 아닌 여성 개인을 위한 휴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가족 유대를 위한 근무 규정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 유지 및 상례와 제례 등 가족의식에 대한 휴가도 적어 가족 화합 및 유대 강화 목적의 휴가는 가족 중심의 조선시대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2) 현대사회에서의 가정생활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지원

조선시대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부양 책임을 지고 있던 남성이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적지 않게 받았던 것처럼 현대 사회의 많은 취업여성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있다. 기업 및 기관은 근로자 가족을 위해 주말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부부 동반 여행, 가족 음악회 및 캠프 운영, 가족상담, 가족의 날 제정 등 가족친화적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2>.

조선시대에는 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거나 가사를 돕는 인력을 제공하였던

것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7년 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엇보다도 취업여성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립, 24시간 운영하는 시간연장 보육의 실시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가족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이 1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12-14시간이 62.5%를 차지하여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은 더욱 감소하고, 시설이 위치하는 곳이 거주지 중심 환경이 아니라 실외놀이가 어려운 직장 중심의 환경이어서 아동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혜린, 2009).

조선시대는 가족을 중시하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 경계의 투과성이 커서 가족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충족되었으나 현재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개별 가정의 욕구 또는 가족단위의 욕구보다는 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에 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대체 여성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또 다른 여성과 그의 가족을 희생시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12시간 이상 근무를 감수해야하는 문제가 그 대표적 예가 된다. 드루실라 바커와 수잔페이너(2006)는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빈곤한 여성이 부유한 여성의 돌봄 노동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진보연대(2008)도 보살핌 노동을

〈표 2〉 관공서 및 기업의 가정친화적 프로그램

시행 기관	가정친화적 프로그램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탄력근무제
국민연금공단	육아양육휴가(1달에 1일 유급휴가) 육아휴기간 2년 연장
여성부	업무집중시간 준수, 7시 이후 퇴근 1시간 내외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 배우자 출산 휴가 의무화
충청북도	친임신부 문화 확산 캠페인(친임신부 권리 선언문)
금천구	금천女·幸 프로젝트 사업(실천기업인증)
K사	근무시간 단축제도 (3세 미만 영유아를 둔 사원은 1년 동안 주당 15-30시간 근무)
B계약사	1년 휴직, 임신 중 월 1회 휴가
L사	패밀리데이 (월 1회 5시 퇴근)
S기업	직원대상의 주말농장 운영
H기업	사이버주부대학
B 기업	부부동반여행 및 콘서트 관람
K 기업	엄마 아빠 회사 알리기 행사
L기업	직원자녀 영어캠프
H은행	어린이집 운영 및 방과 후 교실 운영
T기업	수요일 조기귀가
C기업	가족음악회, 임직원 자녀대상 꾸러기캠프
H사,	수유 휴게공간을 마련
N사	모자 유친방, (모유수유실), 산후조리용 의자
KT	I-cam 설치, 근무 중 자녀상태 확인 임산부 차량 요일제 면제 출산의료비 전액 지원
Y사	피톤치드 프로그램 (가족 상담)
D사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프로그램 재택근무제, 유연노동시간제
기타	보육비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보육비·간병비 지원, 주택마련비 지원, 의료비 대출 지원

중앙일보(2009). 임신부에게 대중 교통 좌석 양보틀. 7월 4일.

중앙일보(2009). 직장맘 업무시간 줄이고 사내커플 같은 지역 근무. 6월 19일.

중앙일보(2008). 칼퇴근 하는 날 주 1회 제정. 12월 29일.

여성가족부(2007). 신경영프로젝트 가족친화경영,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

<http://blog.naver.com/deahn/60012796550>

고용확대와 연동시키는 것은 노동유연화로 또 다른 하위 계층을 형성하면서 가정 내 노동을 가정 밖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많은 부분이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취업여성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볼 때 이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노동인력은 증가시키고 있으나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직장보육시설에 입소하는 보육 아동은 매년 증가하여 1990년 1,500명에 비해 2008년에는 16,809명으로 거의 10배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송혜린, 2009 재인용). 보육시설 아동의 증가는 어머니의 돌봄 노동이 시장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켈리 테일러(2008)는 ‘보살핌은 인간의 본능이며 사회를 하나로 묶어 주는 힘’이라고 주장한다. 애정, 돌봄 등의 본능적 욕구 충족의 기회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더불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보육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는 가정생활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여성학자들은 가정친화적인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동아일보, 2008). 앤서니 기든스(2003)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노동과 가정간의 균형이 회복되고 사회의 양극화도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정친화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아동의 권리, 부모의 권리를 강조해야하고 가족 돌봄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족친화를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표 2>에서처럼 주부, 직원자녀 등 개인 단위로 지원되는 것이 적지 않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도, 가족이 함께 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조기 퇴근, 가족의 날 지정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나 아동과 부모의 귀가 시간,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한 가족친화적 효과는 무의미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가족친화의 방향을 돌봄의 권리 회복에 맞춘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내고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사회적으로 일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며, 근로시간과 학습시간을 가족시간과 연동시키는 가족단위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자녀 방학 때 자유롭게 휴가 갖기 (여성가족부, 2007), 정시퇴근, 초과근무 제한(정영금, 2008)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 많이 제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가족이 중시되어 사회적 업무와 역할수행은 개별 가정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가족기능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공적 일과 사적 활동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였다. 현재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가족친화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 경계의 투과성을 높이면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동일 비중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터는 가정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준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과 사의 영역이 분리된 것이 산업사회 이후로 논의되면서도 지금까지 산업사회 이전 사회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효를 강조하는 가족이데올로기가 사회적으로 강조되었던 조선시대의 관직자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생활문화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선행적 자료로서 이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 오늘날 가정친화적 정책으로 일 중심의 직장문화로 인한 가족의 갈등, 취업여성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때에 조선시대 관직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연구는 매우 유용한 준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문헌을 통해 조선시대 관직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킨 실태를 고찰하면서 현대 사회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비교하여 새로운 준거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조선시대는 가정의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분리하는 내외법이 지배하던 사회였으나 가족을 중시하는 효 이데올로기에 따라 관직자들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즉 공무집행과 가정생활 모두에서 책임을 갖고 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지만 남성들은 출퇴근 전후로 가정 내 생필품의 출납과 노비관리, 손님 접대 등 가정관리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사회적으로도 남성이 가정친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관리의 일과를 보면, 출퇴근 근무 규정은 오늘날과 유사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은 융통성이 컸다. 국가적으로는 국교 이념에 따라 효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부양, 상례, 제사 등의 가정 의식과 관련된 휴가를 공무 중 장기간 보장해주었다. 이는 오늘날 출산 육아 휴가나 휴직이 주어지는 것과 유사하나 조선시대는 개인보다 가족단위로 휴가를 제공하여 가족을 중시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관과 관리들은 가족 부양이나 가족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의 요청이 있을 때 공과 사를 따지지 않고 관재와 관원을 제공하였다. 지역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정생활을 지지하기 위해 사적인 일도 공무의 일부로 처리될 만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는 매우 투과성이 컸다.

이러한 조선시대 관행은 당시의 경제체제가 소비와 정수가 분명치 않았던 선물경제에 기반하고 있었고 효 이데올로기가 통치 철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화되었다. 근대적 시각에서 볼 때 칭탁과 선물에 의한 가족부양은 관재 비리 또는 부정부패로 비난을 받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친족 망으로 상부상조하던 관리로부터 우호적인 지원을 공공연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가족이 유지되고 가족에 기반한 사회도 안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가정친화적 일-가정 양립 정책을 준거로 볼 때,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와 방향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남성중심이 아닌 여성 중심의 정책이 되고 있으나 가정친화적 정책의 역사성은 남성의 일에서 더 잘 찾아볼 수 있으므로 남성이 가정생활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근로 남성을 중심으로 가정친화성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주요한 보육정책이 보여주듯 일-가정 양립의 정책이 시장대체 노동에 의존하여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가정의 본능적 돌봄 노동을 중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가정의 돌봄 노동을 시장노동으로 대체하는 경우 가족은 애정과 같은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근로 여성에게 의존하게 된다. 정책의 목표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수행되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족시간을 일치시키는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는다면 개인 단위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족 관계도 중요한 삶의 일부이므로 가족단위의 지

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녀의 효도 방학, 놀 토와 같은 가족 시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서, 직장 에서 마련한 가족의 날에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가족의 유대와 화합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관이나 기업 단위로 시행되는 정책은 개인과 개별 가족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 개인과 개별 가족의 요구에 유연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 투과성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족휴가에 사용한 시간을 일정시간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거나, 직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적인 교육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편입시켜 노동시간 대비 휴가시간을 증가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를 유연하기 위한 철학적 논리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효 이데올로기와 같이 가족부양을 정당화시키는 윤리 의식으로 부양자의 권리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가장이 가족부양을 위해 관에 지원을 요청을 하였을 때 우호적으로 접수된 것처럼 부양자의 권리를 인정할 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의 벽이 낮아지고 투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제시된 방향이 가져올 비용 부담이나 실현가능성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가정의 돌봄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유대를 증진시키는 일-가정 양립의 방법을 창의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과 사의 경계를 새로이 규정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로서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를 현대생활에 접목시켜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으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국가법령정보센터(2009). <http://www.law.go.kr/LSW>.
- 2) 김경수, 이영화(2004). 테마로 읽는 우리 역사. 서울 : 동방미디어.
- 3) 김병숙(2003). 조선시대의 직업시장 특성과 직업윤리. 진료교육연구 16(2), 1-29.
- 4) 김성희(2000).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가장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3-23.
- 5) 네이버(2005). <http://blog.naver.com/deahn/60012796550>.
- 6) 동아일보(2008). 여성의 또 다른 이중부담: 노동과 가정의 양립. 2008.8.29.
- 7) 드루실라 바커, 수잔페이너(2006), 사랑의 노동-보살핌의 비용, 사회운동통권 62, 183-201.
- 8) 박미혜(2007). 조선중기 수령의 가족부양으로 본 장자의 역할과 가의 범위. 사회와 역사 75, 197-218.
- 9) 법률지식정보시스템(2009). <http://likms.assembly.go.kr/law>.
- 10) 사회진보연대(2008).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사회의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사회진보연대, <http://pssp.org/bbs/print.php?board=sola&id=487>.
- 11) 셸리 테일러, 임지원 옮김(2008). 보살핌은 ‘착한 본능’ 사회를 묶는 따뜻한 끈. 서울 : 사이언스 북스.
- 12) 손병규(2004). 총론: 호적대장의 직역기재 양상과 의미. 한국역사연구회, 제 79회 연구 발표회.
- 13) 송혜림(2009). 가족친화적인 환경으로서의 직장보육시설. 한국가정관리학회 2009년 제 46차 추계 학술대회: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93-99.
- 14)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2003). 현대사회학. 서울 : 을유문화사.

- 15) 여성가족부(2007). 신경영프로젝트 가족친화경영. 여성가족부가족문화팀.
 - 16) 오희문(1990). 쇠미록(상·하). 해주오씨추탄공파중증.
 - 17) 유희춘(1992). 미암일기 제 1집. 담양향토문화연구회.
 - 18) 유희춘, 정창권 풀어씀(2003).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미암일기. 서울 : 사계절.
 - 19) 윤국일(1990). 경국대전 연구. 서울 : 신서원.
 - 20) 이성임(2005). 16세기 양반사회의 “선물경제”. 한국사연구 130, 53-80.
 - 21) 이성주(2007). 엽기조선왕조실록. 서울 : 추수밭.
 - 22) 장승희(2002). 다산 정약용의 공직윤리연구. 동양철학연구 30(0), 77-103.
 - 23) 정영금(2008).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14.
 - 24) 중앙일보(2009). ‘임신부에게 대중교통 좌석 양보를’. 2009.7.4.
 - 25) 중앙일보(2009). 직장맘 업무시간 줄이고 사내커플 같은지역 근무. 2009.6.19.
 - 26) 중앙일보(2008). ‘칼퇴근 하는 날, 주 1회 제정’. 2008.12.29.
 - 27) 통계청(2009). <http://www.kostat.go.kr>.
 - 28) 하영휘(2008). 양반의 사생활. 서울 : 푸른역사.
 - 29) 한국고문서학회 엮음(2000). 조선시대 생활사2. 서울 : 역사비평사.
 - 30) 한국고문서학회 엮음(2002). 조선시대 생활사. 서울 : 역사비평사.
- 투 고 일 : 2009년 7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1월 18일